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독도연구소의 『영토해양연구』를 중심으로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독도연구소는 독도 연구를 선도하며, 연구 성과 축적을 촉진하고 연구자 양성에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독도연구소를 비롯한 전문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의 결과 독도 관련 연구는 방대한 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독도’를 주제로 연구 논저를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단일 연구 주제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독도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다행히 독도 관련 연구 동향과 성과를 점검한 선행 연구들이 있어 그 간의 독도 연구의 동향과 흐름,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 논문 투고일: 2018. 10. 10. 심사 완료일: 2018. 11. 7. 재심사 완료일: 2018. 11. 16. 게재 확정일: 2018. 11. 19.

있다.¹

독도 연구 경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또한 문제점이 여전히 독도 연구에서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선행 연구들은 해방 이후 독도 연구의 최대 성과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학, 국제법, 지리학, 국제정치, 역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역사학과 국제법 분야에서 나온 독도 연구 성과를 당시 한국의 학술적 역량을 보여준 우수한 성과로 손꼽았다. 그리고 이 성과를 뒷받침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과 지원의 결과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이 주고받은 외교 각서의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학계는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국제법과 사례를 점검하여 성과를 보완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 성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성과와 더불어 독도 연구 경향의 문제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수백 편의 독도 연구 성과가 있지만, 한일 간 쟁점을 제대로 규명한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연구의 양적 팽창이 질적 제고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대표적인 학제 간 연구 성과로는 1978년 한국사학회가 발간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연구』와 이후 연구진을 보강하고 내용을 확충하여 1985년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명의

1 김병렬·노영구·이상근, 2009, 『독도 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환, 2014,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9; 문철영, 2016, 「독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제 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No. 21; 김홍동, 2012,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이사부와 동해』, Vol. 4; 한철호, 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 40; 유미림, 2006, 「독도 자료집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서장 참조; 이성환, 2011, 「독도 연구의 회고와 전망-2010년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 김수희, 2013, 「독도 연구의 실증적 연구방법과 그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5; 오일환·이연식, 2015, 「국내 독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경향-학술논문에 관한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0; 김병렬, 2016, 「독도 관련 문제 연구를 위한 일 제언」, 『영토해양연구』 11.

2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독도』, 1965, 대한공론사; 한국외무부, 1977, 『독도관계자료집 Ⅱ』; 한국사학회, 1978,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연구』;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독도연구』.

로 재발간된 『독도연구』를 꼽을 수 있지만,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학제 간 연구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의 공동 연구라기보다 개인의 연구논문을 모아놓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³ 또한 한국에서의 독도 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형태가 주류이며, 일본 자료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결론 없는 논쟁만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독도 연구가 당위론적 결론으로 출발하여 직간접적인 영유권 강화로 귀결되는,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대동소이한 목적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⁴ 그리고 독도 연구의 폭발적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196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종래의 연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도 동일하다고 한다.⁵

다음으로 독도 연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사료 활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사료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면밀한 사료 검토를 통한 연구의 심화라는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자료에 대한 정확한 번역과 면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포함된다.⁶ 한국과 일본의 연구 풍토 중 각각 자국에 유리한 사료만 공개 활용하고, 그마저도 취사선택의 편의성과 자의성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연구자들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연구 태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결과를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만 인용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⁷ 연구 성과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인식과 태도가 학제 간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일 수

3 김병렬·노영구·이상근, 2009, 앞의 책, 192쪽.

4 이성환, 2011, 위의 글, 252~253쪽.

5 이성환, 2014, 위의 글, 309쪽.

6 유미림, 2006, 위의 글, 321~322쪽.

7 오일환·이연식, 2015, 위의 글, 7쪽.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인식과 태도는 선행 연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진전을 가로막고 동일한 내용의 연구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이 독도 연구 경향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일찍이 제시된 셈이다. 독도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첫째, 역사학과 국제법을 포함한 공동 연구, 즉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사료 발굴의 중요성과 사료에 근거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독도연구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6월 현재 독도 관련 학술논문을 10개 이상 발표한 기관은 13곳인데, 그중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에 수록된 논문이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논문이 약 6%를 차지한다고 한다.⁸ 이 중 영남대 독도연구소의 성과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적이 있다.⁹ 이 논문은 독도연구소가 2011년 창간한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독도 관련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첫째, 독도연구소의 간행물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 목표와 지향점을 알아보고, 둘째, 독도연구소가 독도 관련 현안과 쟁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대응 방안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셋째, ‘독도연구소’로서 의제 설정과 선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영토해양연구』 수록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관련 연구 성과를 같이 검토하였다.

8 오일환·이연식, 2015, 앞의 글, 11쪽.

9 문철영, 2016, 위의 글 참조.

II. 독도 연구의 시의성과 기대효과: 『영토해양연구』의 ‘특집’

1. 독도 연구의 기획과 체계적 성과 확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2011년 ‘영토와 해양을 둘러싼 갈등과 해소의 사례를 연구, 조사, 소개하는 공론의 장(場)을 국내외의 관련 학계에 제공하기 위해’ 『영토해양연구』를 창간하였다. 『영토해양연구』는 전문학술지를 표방하며 연 2회씩 발간되어 2018년 현재 총 15호를 발간하였으며, 총 130여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학술지의 목적이 독도를 포함한 영토와 해양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큰 틀에서 수록 논문 전체가 독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독도를 직접 다루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문을 추출해보면, 전체 수록 논문의 약 60%를 차지한다.

『영토해양연구』에는 특집, 특별기고, 연구논문, 사료해제, 서평 등 다양한 형태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연구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논문에서는 특집, 기고, 연구논문, 사료해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연구논문의 경우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주제와 사료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 특집논문과 사료해제 분석에서 같이 검토하였다.

『영토해양연구』의 ‘특집’은 창간호부터 8호까지만 기획논문이 게재되고

〈표 1〉 『영토해양연구』 수록 ‘특집’

번호	주제명	연도	호수	논문 편수	비고
1	한일관계와 독도	2011	1	5	
2	동해 지명 표기	2011	2	4	
3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과거·현재·미래	2012	3	4	3호에 특집 주제 2개 수록
4	한·일 교과서와 독도	2012	3	3	
5	국제법과 해양경계	2012	4	3	
6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2013	5	4	
7	1905년 국제사회와 독도	2013	6	2	7호 특집 없음
8	이어도 특집	2014	8	2	좌담회 개최 9호부터 특집 없음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중단되었다. 편집자의 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다. 특집 주제는 대체로 독도에 집중되어 있다. 특집 주제는 시의성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선정되었을 것이므로 그 결과도 이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즉, ‘특집’의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의식의 확장, 공동 연구 목표와 분담된 연구 내용의 조화를 통한 연구의 진전일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특집에 수록된 논문들의 연구 주제와 내용을 살펴 보면 시의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공동 연구로서의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논문이 모여져 있을 뿐이다. ‘특집’으로서 일반적인 시의성과 필요성 이외에 뚜렷한 기획 의도와 목표가 제시된 경우도 드물다. ‘특집’의 기획력 부족과 더불어 9호부터 ‘특집’이 없어진 것은 독도연구소와 『영토해양연구』가 독도 연구에서 수행해야 할 의제 설정과 선도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특집’ 기획은 독도 연구에서 기획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성과 공유 체계를 통해 연구를 확산·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표 1〉을 보면 특집 주제는 독도연구소가 기획해볼 만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번과 3번은 연구과제 결과물의 일부를 수록한 것이고, 4번과 6번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 카이로선언 70주년을 기념한 시의성 있는 기획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집마다 총론에 해당하는 글이 없어 특집 기획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먼저 특집 ‘한일관계와 독도’는 독도연구소의 임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독도 자료 정리와 해제, 자료집과 연구총서 발간, 관련 연구 촉진이라는 이상적인 연구 체계와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특집은 독도연구소의 연구 지원 결과물인 총 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¹⁰ 독도연구소는

10 이형식, 2011, 「패전 후 일본학계의 독도문제 대응(1945~1954): 국제법학계와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정박진, 2011, 「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석: 고유영토 다케시마(독도) 영유 의사의 검증」; 전상숙, 2011, 「한국 식민지시기 전후의 연속성 속에서 본 한·일 독도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 정미애, 2011, 「한일회담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치적 함의」; 조윤수, 2011, 「한국 교섭 참석자의 일본 인식 변화와 한일회담」, 『영토해양연구』 1.

2008년 일본의 한일회담 외교문서 약 6만 5천 장이 공개되자 이를 정리·해제하는 연구 사업을 기획·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일본 공개 외교문서 원문 전량을 출판하고, 이 중 독도 관련 문서를 선별하여 6권의 자료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연구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재단의 연구총서로 간행되었다.¹¹ 이 특집은 이 같은 연구 사업의 과정에서 나온 연구논문을 특집으로 게재하였다. 특집을 통해 일본 정부와 학계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 한일 간 독도 문제가 지닌 역사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집으로서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개별 논문들의 성과와 무관하게 '특집'으로서 문제의식의 동질성, 개별 연구 주제 간 연계성, 일본 외교문서라는 공통적인 자료 활용성 부족 등 공동 연구의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독도연구소의 연구 지원은 한일 외교문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학계에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 결과 특집 논문들 외에도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촉진시켜 연이어 『영토해양연구』에 연구와 사료해제가 수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윤수는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일회담 전개 과정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입장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한일 양국은 최종적으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으로 독도 문제를 양국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하였고,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철저한 중립을 택했다고 평가한다.¹² 이 연구에서는 미국 공문서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를 소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인 듯하다. 미국 공문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에 앞서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정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한일 간 현안 문제였고,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문제 등 한일회담

11 이원덕·전상숙 등, 2013,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12 조윤수, 2012, 「한일회담과 독도: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4.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따라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검토할 때 독도 문제만을 떼어서 검토하는 것은 이 시기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정책과 대응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일찍부터 정치학 분야의 선도로 한일문제는 한미일 3국 관계 속에서 조망되고 있다.

특집 3번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에서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과 남사군도의 분쟁을 다루었다.¹³ 이 특집은 기획의 경위와 의도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독도연구소는 2011년 3년간의 중기 기획연구과제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 연구를 통해 일본의 영토정책을 밝히고, 독도 도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⁴ 이 특집은 2010년 9월 중일 간 영토분쟁이 발발함에 따라 시의성 있게 기획되어 일본과 영토 분쟁중인 러시아, 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까지를 검토하였다. 각 논문의 문제의식과 구성 체제는 다르지만 해당 영토분쟁의 역사적 연원과 경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냉전 체제 해체 후 지역 내 영토분쟁이 심각한 갈등 요소가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도 이 같은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조망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특히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수로 지역 내 갈등과 견제뿐 아니라 미·중 간 세계 질서 속에서의 갈등과 견제 구도까지 중첩됨으로써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획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물은 독도연구소 명의의 기획연구 저서로도 발간되었다.¹⁵

13 하도형, 2012, 「2010년 중·일 다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대응」; 김인성, 2012, 「러시아 쿠릴열도 정책의 변화와 함의: 2009년 이후를 중심으로」; 이명찬, 2012, 「일·중 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김동욱, 2012,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 방안」, 『영토해양연구』 3.

14 이명찬, 2012, 위의 글, 53쪽.

15 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2013,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이처럼 두 개의 특집은 독도 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기획이었고, 독도 연구 체계의 전형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특집이다. 또한 독도연구소의 선도 기능도 잘 보여준 사례이다. 우선 두 개의 특집은 독도 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기획이었다. 두 개의 특집은 시의성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자료 공개, 일본의 영토분쟁 촉발이라는 조건에서 발 빠르게 기획한 주제이다. 특히 한일관계 특집은 일본의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대량으로 공개되자 독도연구소가 이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전까지 한일회담 관련 연구가 지체된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자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대량 공개는 연구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한일관계와 독도 문제를 시급한 연구과제로 제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연구소가 자료 공개와 동시에 자료 정리와 연구 촉진을 연구과제로 설정한 것은 시의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기획이었다. 일본이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과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대한 특집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 연구의 기획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였다. 다음으로 두 개의 기획 특집은 독도 연구 체계의 진행을 보여준 사례이다. 연구과제 기간을 다년으로 설정하여 질적 성과를 보장해주었고, 연구결과물을 자료집과 연구서로 간행해 학계에 제공하였으며, 중간 성과를 특집 연구논문으로 게재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다년의 연구 기간을 통해 참여 연구자들은 문제의 식과 연구과정을 공유하고, 자료 정리와 활용과정도 공유함으로써 학제간 공동 연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독도 연구에 필요한 과제이며 독도연구소와 같은 전문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 독도 연구의 시의성과 연구의 심화

특집 주제 4번 ‘한·일교과서와 독도’는 『영토해양연구』 3호에 수록된 것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으로,¹⁶ 3호에는 두 개의 특집이 수록되어 있다. 이 주제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독도연구소가 기획·연구해온 주제로 주기성을 갖는 연구주제이다.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은 이 특집 외에도 『영토해양연구』에 여러 편의 논문이 게재될 정도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¹⁷ 한국과 일본은 교과서를 매개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교과서는 초·중·고 교과과정에 따라 사용되는 주요 교재로 학계의 통설에 따른 정수(精髓)만을 추출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한일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기술 현황과 내용, 특징,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독도연구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최근 한일 양국의 역사 교과서와 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기술 현황과 독도 교육, 영토 교육에 관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 논문은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수록 내용과 수준을 정해서 독도 교육과 영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계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연구 성과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독도 교재 보급과 교육, 다양한 체험학습, 한일 간 교사와 학생 교류 등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도 교육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 같다.

한 사례로 초등학교의 독도 교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독도 교육은 주로 교사의 연구 경험으로 형성되고 주도되고 있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가 주도 정책으로 의무화된 독도 교육에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일부 관심 있는 교사에 의해서만 독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었고, 학생들 다수도 독도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16 김영수, 2012,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심으로」; 남상규, 2012, 「전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한철호, 2012, 「한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 경향과 과제」, 『영토해양연구』 3.

17 남상규, 2011,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 허은실·남상준, 2013, 「일본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 내용」, 『영토해양연구』 5; 서종진, 2014, 「아베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와 검정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 『영토해양연구』 8; 홍성근,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4.

않고 있었다.¹⁸ 이 연구는 일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에 기초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결론을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독도 문제와 독도 교육에 갖는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한 우려는 독도 연구자와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교육 현장에서 한일 간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후속 세대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민족주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왜곡된 민족주의가 영토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약화가 영토분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국 응답자 67~68%가 이 같은 해결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즉, 영토분쟁은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은 지역 통합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럼에도 지역 통합에 대한 지향성은 지역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영토분쟁과 결합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망된다. 지역 내 세력 균형과 분쟁 관련국들 사이의 공통 동맹국의 존재가 분쟁의 폭발성을 조절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도가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제어하고, 민족주의적 선동과 무력 동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강조된다.²⁰ 이 같은 점은 독도 교육에서도 귀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독도 문제를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을 전제로 애국주의적 정서에만 기대기보다는 역사적 연원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인식,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을 토대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도연구소도 초·중·고용 독도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18 김소용·남상준, 2015, 「영토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독도교육을 사례로」, 『초등교육과 교육연구』 21.

19 이성환, 2013,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 대학생의 인식조사」, 『영토해양연구』 6.

20 최운도·배진수, 2015,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영토해양연구』 10.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독도 교육, 영토 교육에 대한 목적과 방법론에 대해 성찰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한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검토한 연구논문들이 기술 현황과 변화만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쉽다. 독도 교육도 한국의 교육 목표와 과정 속에서 조율되고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도 교육의 성과와 과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점검되고 실행되어야 할 때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카이로선언 7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독도연구소는 특집으로 『영토해양연구』에 총 세 편의 논문을 기획·수록하였다.²¹ 한국 학계는 전후 한일관계와 독도 문제에서 카이로선언이 가지는 중요성을 오랫동안 주목해왔다. 따라서 카이로선언 70년을 기념하는 특집은 중요한 기획연구 주제이다. 이석우는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문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항복문제가 하나의 법적인 구도로 통합되어 연합국과 일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서가 되었고, 대일평화조약에 제 원칙들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의 최종적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써 한국은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해야 하고, 일본은 연합국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시적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최영호는 카이로선언에 한반도 독립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 장제스가 한반도 독립 문제를 강조하고, 이에 영국과 소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4개국 모두 조선인 독립운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써 독립은 조선인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앞의 두 논문이 한국 문제를 분석했다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카이로회담과 카이로선언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반응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카이로선언 자체에 대

21 이석우, 2013,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최영호, 2013,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2013,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문제」, 『영토해양연구』 5.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으며, 카이로선언을 소련에 대한 일본의 북방 4개 섬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연합국과의 대일강화 과정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소련 영토로 편입하는 것에 반대했는데, 카이로선언이 일본의 영토를 부당하게 재확정하는 근거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일본에서 카이로선언에 대한 평가는 오랫동안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한 난폭한 항복 권고로 여겨졌고, 이에 대한 반발로 표출된 것이 제3차 한일회담에서 나온 구보타(久保田貫一郎)의 망언이라고 지적하였다. 1953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 측 대표 구보타는 “카이로선언은 전쟁중 흥분 상태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망언을 해 한일회담이 4년 6개월여간 중단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카이로선언은 전후 동북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행위의 격퇴와 원상 복구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한국의 독립문제, 일본의 영토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카이로회담과 선언은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연구 주제이다. 이를 반영해 2013년 카이로선언 7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는 다양한 학술 행사와 한국과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에 반영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확인된 카이로회담과 선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뒤집고, 자료 부족과 오독에 따른 사실 왜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²² 독도연구소가 이 주제로 특집을 기획한 것은 이 같은 중요성을 반영하고, 연구의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 이 특집주제는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는 기획이었다. 특히 와다 하루키의 연구를 통해 일본의 카이로선언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이

2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발굴 자료 및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정병준, 2014,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 조항의 작성 과정」, 『역사비평』 107; 한시준, 2014,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배경한, 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蔣介石」, 『역사학보』 224.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구보다 망언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하여 흥미로우며, 향후 카이로선언에 대한 연구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특집기획을 통해 카이로선언에 대한 연구 진전을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위와 같은 두 개의 특집이 시의성에 맞춰 기획되고 연구 심화를 시도하였다면, 다음의 특집 주제는 연구의 심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영토 해양연구』 4호의 특집은 ‘국제법과 해양경계’이다. 이 특집에 수록된 논문은 세 편으로 페드라브랑카 사건 판결, 평화선 문제,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²³ 페드라브랑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던 무인도로 분쟁 대상지였으나, 2008년 5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싱가포르 영토로 판결하였다. 이후 국내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관원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와 관련한 입장문 제출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해당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스투어트 케이의 연구는 한국의 평화선 선포가 당시 국제 해양법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확정된 국제 선례’에 따랐다고 한 점을 해양법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해양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평화선이 대륙붕의 법적 개념 형성을 촉진했고, 20년 후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를 예측케 한 경제계획에 접근한 통찰력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일부 선행 연구가 평화선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 해양법의 발전 과정에서 평화선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하고 있어 문제의식의 확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평화선 문제는 역사학 분야에서도 관심 주제였기 때문에 평화선이 지닌 역사성과 한일회담 과정에서 차

23 마르셀로 코헨(Marcelo Kohen), 2012, 「페드라브랑카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있어서의 본원적 권원」; 스투어트 케이(Stuart Kaye), 「해양법의 발전에서 평화선이 지니는 의의」; 김관원, 「동중국해 대륙붕 경제계획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잠정적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4.

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²⁴ 이에 따르면 평화선 선포는 한일 간 조속한 어업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영해와 대륙붕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정세 출현에 대응한 결과였다. 평화선 선포 직후 미국과 일본 정부는 평화선이 공해상의 자유항행원칙을 위반한 불법적인 경계선이라고 비난했지만, 평화선 선포를 준비하며 한국이 국제 해양법의 새로운 변화 추이에 민감하게 대응했다는 점, 일본과 어업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던 호주가 평화선 관련 내용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평화선 문제는 학계 간 연구로의 확장 and 협업이 기대되는 주제이다. 한국 정부가 평화선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 해양법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반영했는지, 한일관계의 역사적 측면이 평화선 선포에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는 국제법과 역사학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영토해양연구』 6호의 특집은 ‘1905년 국제사회와 독도’로 두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박배근은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할 당시 국제법상 선점의 유효한 요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19세기 전후 국제법 학자들의 저술에는 선점 대상 토지가 무주지일 것, 선점 대상 토지를 영유할 국가 의사가 존재하고 공시될 것, 선점 대상 토지에 대한 실효적 점유 또는 지배가 있을 것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독도를 이런 학설에 비춰보면 핵심 문제는 1905년 시점에 독도가 무주지였는지 여부, 한국에 대한 통고 결여가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인데, 최소한 시마네현 고시로써 독도 영유 의사가 충분히 공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김관원은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일본의 주장인 ‘무주지 선점론’과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일본 정부

24 오제연, 2005, 「평화선과 한일협정」, 『역사문제연구』, 14; 박진희, 2006, 「제1공화국 시기 '평화선'과 한일 회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박진희, 2009,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평화선과 어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 정치외교의 주요 쟁점과 논의』, 선인.

25 박배근, 2013,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김관원, 2013, 「1905년 독도 편입 주장의 허구성에 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6.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의 견해와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특집 주제가 지닌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춰 기획의 결과가 두 편의 논문으로만 그쳐 아쉽다. '1905년'의 시점에 독도 문제 또는 한국의 영토 문제와 관련해 등장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 영국 등 여러 나라이고, 당시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독도의 운명을 조망해보는 연구도 기획해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해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 오래전부터 견제와 대립을 거듭해오고 있었다. 1875년에는 러시아가 사할린을, 일본이 쿠릴열도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사할린-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하였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사할린까지 차지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이 패전하자 1945년 8월 소련군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점령하고 영토로 편입했다. 이는 알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결과였다. 그리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쿠릴열도의 귀속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의 주권 포기가 명시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팽창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립은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울릉도와 거문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1885년 거문도사건은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의 이해가 충돌한 사건이었다.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한국 영토에 대한 침탈과 점령으로 이어진 것이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한 것도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때문이었다. 그리고 러일전쟁 강화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해 한국에 대한 이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미국과 영국도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조치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한국에 대한 침탈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와 제국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독도 문제와 현재 분쟁중인 동아시아 영토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를 포함한 한국 문제, 현재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뿐 아니라 서양사, 동양사를 망라한 역사학,

국제정치학, 국제법 등 관련 학문 분야 간의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독도 사료 발굴과 연구: 『영토해양연구』의 ‘사료해제’와 ‘연구논문’

1. 울릉도 관련 사료 발굴과 연구

『영토해양연구』 구성 체제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사료해제’이다. 독도연구소의 역할 중 하나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성을 조사·연구하는 것이고, 독도 관련 사료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영토해양연구』에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사료해제가 꾸준히 실려 총 11편이 실려 있으며, 이중 4편을 제외한 사료 해제자가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이다. 사료해제 대상이 된 사료 중 다수는 울릉도 관련 사료이다. 연구자들은 독도 연구를 위해 울릉도에 대한 연구로 대상을 확대했고 사료 발굴로까지 이어졌다.

사료해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울릉도, 독도 관련 자료들이 소개·검토되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선행 연구들은 사료 발굴, 정확한 사료 해독 및 활용

〈표 2〉 『영토해양연구』 수록 사료해제

번호	필자	논문명	호수	연도
1	윤유숙	『天保雜記(천보잡기)』 所收 울릉도(죽도) 관련 사료	1	2011
2	김영수	‘울도군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선포에 따른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행정 관할 증거	2	2011
3	유미림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다: 사료 발견과 그 의미	2	2011
4	이원덕	일본 측 한일회담(1945~1965) 외교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의 검토	3	2012
5	유미림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6	2013
6	이원택	조선후기 강원감영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8	2014
7	정영미	일본의 독도 영유권 근거 자료 조사·정리의 역사적 경과와 의미	11	2016
8	정영미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12	2016
9	정영미	독도 자료 발굴사	13	2017
10	이기석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	14	2017
11	이원택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15	2018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독도 연구에서 강조해왔다. 사료해제는 이 같은 과제에 부응하고, 사료 발굴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윤유숙은 19세기 일본에서 작성된 『천보잡기(天保雜記)』에 수록된 울릉도 관련 사료를 소개하였다.²⁶ 이 책은 총 56책으로 제18책에 1830년대 발생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1836년(천보7) 하마다번, 오사카, 에도 지역 거주자들이 울릉도에 건너가 일본의 도검류를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막부의 조사를 거쳐 ‘이국도해(異國渡海)’ 죄로 처벌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울릉도는 막부가 도해를 금하는 지역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17세기 말 ‘울릉도 쟁계’의 한일 간 최종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 성과이며, 이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평가하였다.

2010년 울릉군은 개군(開郡) 110주년을 맞이하여 1902년 당시 울도군수였던 배계주와 심홍택의 후손을 기념 행사에 초청하였다. 이때 배계주의 후손은 『울도군절목』 소장 사실을 알리고 공개하였다. 이 사료는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후인 1902년 4월 울도군의 치안 및 행정 현황을 담고 있었다. 이 사료의 공개는 관련 연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수는 『울도군절목』의 작성 배경을 설명하며 대한제국이 칙령 41호에 근거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영토의식과 주권 행사를 시행했다고 하였다.²⁷ 이 사료 공개를 계기로 당시 울도군수 배계주도 연구 대상이 되었다. 『울도군절목』은 배계주가 한양에 있을 때 내부에 건의하여 허가받은 울릉도 통치 행정 명령으로, 배계주가 두 번째로 울도군수로 임명된 1902년에 마련되었지만, 군수로 부임하지 못하고 결국 면직되었기 때문에 후일 실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²⁸

한편 이 사료를 검토해 공개한 유미림은 『영토해양연구』를 통해 절목의 세금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는 절목의 수세 조항

26 윤유숙, 2011, 『天保雜記(천보잡기)』: 所收 울릉도(죽도) 관련 사료, 『영토해양연구』 1.

27 김영수, 2011, 『울도군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영토해양연구』 2.

28 이상태, 2016, 『울도군 초대 군수 배계주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11.

은 독도 강치를 포함한 울릉도의 수출품에 대한 과세 규정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에 파견한 결과를 칙령 41호에 '수세' 조항으로 명기함으로써 관행이던 징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는데, 일본인들이 징세권을 준수하지 않자 절목을 통해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²⁹ 그는 연구 대상을 확장해 1905년 전후 일본의 지방세와 강치어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불법편입한 1905년 이전에는 오키 어민들의 강치어업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1906년 3월에야 과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이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 내세우는 국유지 사용료도 1905년 편입 이후 징수한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일본 스스로 독도 영유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³⁰ 유미림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앞선 연구 결과를 확장시키며 종래의 주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절목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절목은 허위 문서이며,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배계주가 1902년에는 울릉도에 부임하지 못했으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절목에 근거한 과세가 관세인지 통항세인지 밝혀져야 하고, 울도군수의 과세 행위가 독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절목의 과세 조항은 수출세를 부과한 것이고 수출품에 독도 강치 등이 포함되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³¹

그러나 『울도군절목』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주장하는 연구도 이어졌다. 김호동은 절목은 1902년 대한제국 내부에서 울도군에 내린

29 유미림, 2012, 「수세(收稅) 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영토해양연구』 4.

30 유미림, 2015,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영토해양연구』 9.

31 유미림, 2017, 「『울도군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선포에 따른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행정 관할 증거」, 『영토해양연구』 13.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군수 배계주가 ‘군규(郡規)’ 확립을 위해 절목을 만들어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내부는 울도군수인 배계주가 올린 절목을 그대로 시행하라는 공문을 배계주에 보냈으며, 이것이 그 집안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배계주가 분쟁중이던 울릉 군민들을 장악하기 위해 ‘군규’를 만들어 절목의 이름으로 내부에 상신하여 재가를 받아 울릉도에 부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면직되어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목을 두고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관할 구역을 대한제국이 실효적으로 경영한 증거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 절목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무단 벌목과 가옥, 토지 매입 상황, 울도군의 행정 체제 구축 문제, 세수 확보 문제 등 당시 울릉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료라고 평가하였다.³² 김영수, 유미림, 이상태가 관련 연구를 통해 『울도군절목』이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의 증거이며, 실효 지배의 증거라고 평가한 것과는 다른 평가로 관련 연구의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울도군절목』의 발굴 경위와 사료적 가치를 둘러싼 연구와 논쟁은 독도 연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사료는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이 대한제국 시절 울도군수였던 배계주와 심홍택의 후손을 오랫동안 찾은 끝에 발굴해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공개된 사료를 토대로 연구와 논쟁을 통해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관련 사료, 인물, 분야 등으로 관심을 넓혀 연구 주제와 내용을 확장시켜 나갔다. 사료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 ‘우연’이 아니라 사료 발굴자의 목적의식적 사고와 행동의 결과이며 오랜 시간 공들인 결과이다. 『울도군절목』은 이렇게 발굴된 사료이며, 『영도해양연구』에 수록된 사료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이 연구자의 역량과 노력이 투여된 결과로 발굴된 사료이다.

『영도해양연구』 2호에 안용복 관련 사료해제가 수록되어 있다.³³ 사료는

32 김호동, 2013, 「『鬱島郡節目』을 통해 본 1902년대의 울릉도 사회상」, 『장서각』 30.

33 유미림, 2011,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다-사료 발견과 그 의미」, 『영도해양연구』 2.

숙종이 과거시험에서 1693년에 일어난 ‘안용복 사건[울릉도 쟁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시험지와 답안지이다. 이 사료는 당시 과거에 응시한 경북 의성의 신덕함(申德函) 문집에 실려 있었다. 이 사료는 신덕함 후손으로부터 입수하여 영남 지역 선열들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2011년 8월 경북 대구 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가 공개하였다. 사료는 시험문제 1장 반, 답안지 12장 반 등 모두 14장으로 A4 크기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다.³⁴ 해체에 따르면 시험문제는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대일(對日) 대처 방안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묻는 것이었다. 신덕함은 당시 조정 대신들의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비판하였다. 우선 ‘변수를 보내 점거하여 지키자’의 의견은 울릉도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고 우리 군사들이 수로에 익숙하지 않아 표류하거나 역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패하기 쉬운 정책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들의 왕래를 허용하고 우리가 변방 방비를 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남의 영토를 탐하는 상대이므로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울릉도 쇄환정책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審勢得人’, 즉 형세를 잘 살피고 적임자를 얻어 처리하는 방법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신덕함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숙종의 이 책문은 신덕함이 직접 과거장에서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소과와 대과로 구분되며, 예비시험 격인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구별된다.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대과에 급제해야 하는데 초시, 복시를 합격한 후 최종 시험인 전시에서 책문을 지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전시에서 탈락지는 없지만, 합격 등수가 확정된다.³⁵ 따라서 신덕함이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책문은 다른 사람을 통해 시험문제를 알게 된 후 스스로 지어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의 지적

34 『경향신문』·『문화일보』 2011. 11. 14(검색일 : 2018. 7. 20).

35 김태완, 2014,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10~11쪽.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대로 이 사료를 통해 당시 조선이 울릉도 쟁계를 국가적 중대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울릉도를 포함한 변방 영토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숙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 관련 사료해제로는 고종의 밀명으로 울릉도를 조사한 이명우의 『울릉도기(鬱陵島記)』도 있다.³⁶ 이 사료는 이명우의 문집 『묵오유고(墨吾遺稿)』에 실려 있는데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명우는 1882년 3월 고종의 명을 받고 울릉도로 건너가 약 7일 동안 조사하였는데, 울릉도를 개척할 경우 경작지와 주거 지역으로 적당한 지역을 조사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명우가 울릉도 조사를 하고 온 직후인 4월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받은 이규원이 울릉도 조사길에 나선 사실에도 주목하였다. 이규원도 울릉도 조사를 마치고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를 남겼다. 고종이 이때 울릉도 조사를 명한 배경에는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침입과 별목 때문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고종이 이명우와 이규원을 비슷한 시기에 울릉도를 조사하게 한 것은 울릉도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고, 두 사람의 보고 내용을 교차 검토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규원은 1881년 3월 고종의 명을 받아 이듬해 백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울릉도로 건너가 11일 동안 조사한 기록을 『울릉도검찰일기』로 남겼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종은 울릉도 개척을 지시했다. 양태진도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해 이규원의 검찰 활동이 조선의 해양영토 관리정책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조선이 울릉도에 백성을 거주하게 하고 개척하도록 적극적인 해양영토 관리정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³⁷

사료해제에서 보듯 숙종의 책문과 고종의 조사 명령은 모두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체류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의 일단을 보여주

36 유미림, 2013,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집행: 이명우의 『鬱陵島記』에 대한 해제」, 『영도해양연구』 6.

37 양태진, 2013, 「조선 정부의 영토관할정책 전환에 대한 고찰」, 『영도해양연구』 6.

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또한 안용복 관련 숙종의 책문과 이명우의 문집 발굴은 연구자의 역량과 관심으로 발굴·공개된 사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숙종대에서 고종대까지, 한양부터 울릉도까지, 개인 기록에서 정부 기록까지 독도 연구를 위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상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울릉도에 관한 서양의 자료도 적극 발굴·연구되었다. 신용하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899년 12월 우용정에게 조사단을 꾸려 울릉도를 시찰하도록 하였고, 조사단은 1900년 5월 출발하였다. 조사단의 목적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채벌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이 조사단에는 당시 부산해관 세무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와 일본 영사관원 등도 포함되었다. 라포르트는 대한제국의 요청으로 1899년, 1900년 두 번에 걸쳐 울릉도 조사단에 참여하였는데, 조사단에 서양인을 포함시킨 것은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 일본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였다.³⁸ 이때 조사단으로 참여한 라포르트는 울릉도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남겼다.

홍성근은 1899년 울릉도를 시찰한 라포르트의 보고서를 발굴하였다. 그는 당시 『황성신문』과 구한국 외교문서의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여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이 자료를 발굴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울릉도의 지리, 주민 구성과 생업, 불법 거주 일본인들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또한 필자는 사료 발굴의 경위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결과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제정 배경과 내용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제안하였다.³⁹ 이 자료 발굴과 연구 성과는 장세윤의 연구에도 활용되었다.

38 신용하, 2015, 「대한제국의 독도영토 수호정책과 일제의 독도 침탈정책」, 『독도연구』 18.

39 홍성근, 2013, 「라포르트(E. Laporte)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The Report on Ulleungdo by E. Laporte and Ulleungdo in 1899)」, 『영토해양연구』 6.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장세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침탈,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대응을 분석하였다.⁴⁰ 그는 일본 정부와 어민들의 울릉도, 독도 침탈은 오랜 시간 끈질기고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대응은 너무 미약했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어민들과 이규원, 배계주, 심흥택, 이명래 등 지방 관료 등은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릉도, 독도와 관련한 서양 자료 발굴은 정인철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 사실을 추적하며,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국가기록원(The France National Archives)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탐사 목적이 어장 개척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프랑스는 포경 산업의 성장과 남획에 따른 자원 고갈에 대한 타개책으로 새로운 어장 개척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독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⁴¹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사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왜 프랑스 포경선이 동해까지 진출했을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준 이 연구는 발상의 전환이 사실의 확장으로 이어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했다는 주지의 사실로부터 군함이 아닌 포경선이 동해까지 진출한 이유를 탐구함으로써 독도 발견이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음을 알려주었다.

한편 울릉도, 독도 연구와 관련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울릉도 수토 정책이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관리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운영되었는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중요하다.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는 1694년 시작되어 1894년 종료될 때까지 200년간 지속되었다. 이원택은 조선 후기와 19세기 울릉도 수토 관련 사료를 해제

40 장세윤, 2015,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한국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10.

41 정인철, 2014,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7.

하고 번역하여 『영토해양연구』에 연속으로 게재하였다. 이원택은 『각사등록』 강원감영의 울릉도 수토 자료를 소개하며, 선행 연구⁴²에 대한 보완을 위해 총 26건의 새로운 사료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소개하였다. 사료 해제를 통해 울릉도의 수토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개화기의 울릉도 개척 시기에 도 지속되었다가 울릉도 개척의 진전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189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⁴³ 또한 필자는 이 사료해제의 연장선상에서 『일성록』에 실려 있는 울릉도 수토 관련 세 건의 보고서와 『한성주보』에 실려 있는 한 건의 보고서도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소개하였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 관련 사료들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로 통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⁴⁴ 또한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울릉도 수토 연구의 방향은 이양선 및 표류 관련 연구와 연계하여 연구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수토 사례와 연관시켜 연구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통치 행위로서 수토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⁴⁵ 심현용은 수토 관련 연구를 위해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물·유적 등 고고자료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켰다. 그는 수토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 울진, 삼척 지역을 조사하여 포진성, 산수호, 석비, 각석문, 현판, 고문서 등의 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고문서의 기록을 토대로 수토정책의 폐지 시점을 1894년이 아닌 1895년일 가능성과 수토 간격이 초기에는 3년설이 정식이었으나, 1797년 이후 2년설로 바뀌었다고 보았다.⁴⁶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연구가 문헌사료뿐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

42 배재홍, 2011,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유미림, 2009,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43 이원택, 2014, 「조선 후기 강원감영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8.

44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토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5.

45 이원택, 2017, 「19세기 울릉도 수토 연도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23.

46 심현용, 2013,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搜討政策)에 대한 고고학적 시·공간 검토」, 『영토해양연구』 6.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의 자료와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토 문제와 관련해 울릉도 이외 지역의 수토 문제로 연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토 관련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수집과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은 독도연구소가 귀기울여야 할 부분이다.⁴⁷

2. 독도 관련 사료의 정리와 활용

『영토해양연구』 11~12호에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공개·발굴 자료의 목록과 해제가 수록되었다. 필자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독도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자료를 화상 자료로 제작하여 내각관방 사이트(<http://www.cas.go.jp/>)에 게재하고 있다. 주로 17세기 말의 울릉도 쟁계, 18세기 중엽 에도막부 오야·무라카와 가의 울릉도 도해 관련 조사, 19세기 초 일본 어민의 울릉도 재도해 시도와 처벌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자료가 주로 활용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1950~1960년대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 시기에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4~2015년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조사·정리에는 2005년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활동 성과에 반영된 자료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검토, 반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⁸ 또한 필자는 1950~1960년대 한일 간 영유권 논쟁에서 각각 어떤 자료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고 반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그는 연구자들의 사료 이용과 연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은 동일한 자료에서 각각 유리한 부분만 발췌·인용하고, 그 과정에서 쟁점의 본질을 망각하고 세분화된 쟁점에 매몰된

47 손승철, 2015, 「조선 후기 수토 기록의 문헌사적 연구—울릉도 수토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51, 132쪽.

48 정영미, 2016, 「일본의 독도 영유권 근거 자료 조사·정리의 역사적 경과와 의의」, 『영토해양연구』 11.

다는 것이다.⁴⁹ 이 같은 지적은 독도 연구 성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정영미는 한국 외교부가 발간한 『독도문제』를 검토하여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의 발굴 경위를 정리하였다.⁵⁰ 이 지도는 독도와 울릉도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는 것이다. 사료해체에 따르면 삼국접양지도가 수록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은 1952년 3월 제1차 한일회담이 진행중이던 때 문보인이 한국에 유리한 자료라며 외무부에 제공했다고 한다. 원래 이 자료는 일본해양학회 『해양지과학(海洋之科學)』 제3권 제6호에 게재된 자료였다. 이 자료를 받은 외무부는 당시 도쿄에서 한일회담을 진행하고 있던 대표단에게 전달하였다. ‘삼국접양지도’는 이 책에 수록된 5장의 지도 중 하나로 조선,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여러 나라의 영토 형세를 보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원 저자인 하야시 시헤이(林小平)의 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1954년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지도의 목판본 사본을 입수했고, 1964년에는 『삼국통람도설』 6권을 확보했으며, 이후 프랑스판을 비롯한 여러 판본에 대한 수집과 정보가 취합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해주는 일본 측 자료의 발굴 경위를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재구성하고, 한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남영우는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며 ‘삼국접양지도’의 작성 배경과 의도를 밝힘으로써 연구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르면 하야시는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외국의 침략, 특히 인접 3국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야시는 일본과 인접한 3개국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본도 군대를 발동해 간섭해야 한다는 호전적인 국수주의 사상을 지닌 인물이었다. 따라서 하야시는

49 정영미, 2016,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영토해양연구』 12.

50 정영미, 2017, 「독도 자료 발굴사-『독도문제』, 『삼국접양지도』발굴」, 『영토해양연구』 13.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일본 군대가 출동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평소 3국의 지리적 정보 숙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삼국접양지도'도 이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군용지도'의 성격이라고 평가하였다.⁵¹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측에 유리한 자료로 취급되는 '삼국접양지도'에 담긴 하야시의 사상과 작성 목적을 알 수 있고, 특히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자료를 활용할 때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기본이지만, 그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과 작성자에 대한 탐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영토해양연구』에서 사료해제로 소개된 사료들은 해방 이전 시기에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방 이후에 작성된 자료에 대한 해제는 <표 2>의 4번과 10번이다. 4번은 독도연구소의 연구 지원 결과물인 일본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중 독도 자료에 대한 해제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시기별 3단계로 독도에 대한 방침을 수립, 대응하였다. 제1단계(1952~1960)에서는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포 이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제2단계(1962~1963)에서는 김종필과 오히라 간 대타협으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된 후 한국이 독도 문제를 제3국 조정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 이에 대응한 시기이다. 제3단계(1965)는 한일회담 최종 타결을 앞두고 이를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⁵² 연구팀이 수만 장에 이르는 일본 외교문서 중 독도 자료를 선별하고 검토한 결과를 통해 일본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독도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결국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결과 독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일본 언론의 비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조인된 직후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언론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교환공문'을 언급하며 '양보', '포기', '굴욕'이라는 표현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비판했

51 남영우, 2016,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영토해양연구』 11.

52 이원덕, 2012, 「일본 측 한일회담(1945~1965) 외교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의 검토」, 『영토해양연구』 3.

다. 반면 한국의 주요 신문들은 ‘교환공문’의 중요성을 간과해 주목하지 않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신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평가한다.⁵³ ‘교환공문’에는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외교적으로 해결하되,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양국 간 합의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환공문의 쟁점은 한일 양국의 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한국은 독도는 한일 간 분쟁 대상이 아니므로 교환공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반면, 일본은 한일 간 유일한 미해결 문제는 독도 문제이므로 분쟁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양국의 상반된 주장은 양국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독도 밀약설’과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는 한일협정 조인 당일 까지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진 끝에 최종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이날의 타협 결과에 대한 양국의 기록은 각각 다르다. 일본 문서에는 이동원 외무장관이 독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로 귀국 후 독도는 교환공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더라도 일본이 즉각 공식적 반론을 제기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동원이 일본 정부가 국회에서 독도가 교환공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답변을 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사토 총리가 동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문서에는 이동원 외무장관이 독도가 분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사토 총리와의 회담에서 구두로 보장받았고, 또한 우리 정부가 장래 발생할 문제만이 분쟁 대상이라고 주장해도 일본 정부가 반박하거나 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받았다고 기록했다.⁵⁴ 공개된 양국의 문서만 놓고 보면 독도가 한일 간 분쟁 대상 지역으로 합의되어 교환공문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 같은 모호함은 한일협정의 다른 의제 합의문에도 나타나 있어 한일협정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학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불법 점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53 황재원, 2015, 「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영토해양연구』 9.

54 박진희, 2017, 「한일회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69.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울릉도 어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과도정부는 민간 단체인 조선산악회를 통해 조사 활동을 실시했는데, 조선산악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었다. 조선산악회는 해방 이후 적극적인 국토답사와 학술조사사업인 ‘국토구명사업(國土究明事業)’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학술조사단원은 당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⁵⁵ 이기석이 사료해제를 통해 공개한 자료는 조선산악회가 한국산악회로 이름을 바꾼 후 1952년 두 번째로 울릉도와 독도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 작성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이다.⁵⁶ 이 자료는 1952년 당시 학술조사단원으로 참가한 서울대 지리학과 이지호 선생의 사후 2015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악회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국토구명사업’을 실시하여 국토의 지형지세, 동식물, 지질, 방언 등 각종 자료를 조사 수집하였다. 이 중 1947년, 1952년, 1953년 세 번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해방 후 일본인의 불법적인 독도 침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2차는 1차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2차 조사는 1952년 9월 발생한 미국 공군기의 독도 폭격 사건으로 울릉도만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해 10월 강연회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공개되었으나, 정부에 보고한 조사보고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산악회의 울릉도와 독도 학술조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선학들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 학술조사에 대한 목적과 성과가 오늘날에도 이어져 과학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길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에 홍종인, 홍이섭, 박병주, 김원룡, 이지호 등 당대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산악회의 두 번째 학술조사 목적은 1차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 관련 쟁점들이 1차 조사 때

55 조선산악회의 학술조사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2장 참조.

56 이기석, 2017,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 『영토해양연구』 14.

인 이 당시에 이미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IV. 맺음말

『영토해양연구』에는 제언 등의 형태로 독도 연구와 한일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논문도 게재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머리말에서 독도 연구 성과를 검토한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을 정리했는데 문제점 개선이 곧 독도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며, 독도 연구에서 기획의 중요성과 심화 연구의 필요성, 사료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언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종합해 독도 연구와 독도연구소의 과제와 방향성을 가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재정은 독도 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미비한 전후 처리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직시하되, 현실적으로는 양국이 타협과 양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한국이 세심하고 단호하게 관리하는 쪽이 낫다고 조언한다.⁵⁸ 또한 그는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책임을 다음 세대에 미루지 말고 지금 세대가 해결하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자고 제안한다. 한일 사이에 역사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의 모든 부문을 좌지우지하는 유일무이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해결할 현안이 많다는 사실도 상기시키고 있다.⁵⁹ 조세영은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국제법 문제, 정치·외교 문제로서 다

57 이기석 선생님께서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학술회의(2018.8.13)에서 이 자료 사본을 필자에게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58 정재정, 2013. 「한일관계의 위기와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영토해양연구』 5.

59 정재정, 201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중적 성격을 갖는 만큼 ‘종합적 구상력(構想力)’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역사 문제, 독도 문제와 같은 한일관계의 기본 모순은 원칙을 견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경제·통일 분야는 분리해서 실용적으로 협력한다는 ‘분리 대응’의 발상을 주문하고 있다.⁶⁰ 정재정과 조세영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불변의 사실을 토대로 단호하되, 이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을 뒤덮지 않도록 민간 교류 부문의 활성화를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독도를 이슈화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연구소의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한편 앞서 살펴본 대로 이성환은 『영토해양연구』 창간호에서 독도 연구 성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은 수세적, 일본은 공세적인 기본 구조에서 한국의 독도 연구 대부분은 일본의 주장과 자료 해석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특히 한국의 독도 연구가 당위론적 결론으로 출발하여 직간접적 영유권 강화로 귀결되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벗어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한국 측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독자적 관점과 논리의 창조적 재구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잊지 않았다.⁶¹ 2011년 『영토해양연구』 창간호로부터 지금에 이르러 그의 지적과 제안은 얼마만큼 개선되고 반영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이다.

선행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학제 간 연구를 기획,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는 독도연구소가 독도 관련 연구 성과를 수합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정기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진즉에 제시된 바 있다.⁶² 연구의 질보다는 양적 위주의 연구 풍토는 독도 연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학계의 문제이다. 연구자들 간

60 조세영, 2013, 「동북아 영토 마찰의 성찰과 교훈」, 『영토해양연구』 6.

61 이성환, 2011, 위의 글, 252~253쪽.

62 김호동, 2012,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이사부와 동해』 Vol. 4, 135쪽.

의 소통과 공유의 부재, 온정주의적인 관대한 평가 풍토, 연구과제의 불철저한 관리 등도 문제이다. 따라서 독도 연구의 양적 팽창이 질적 제고와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독도연구소의 기본 임무에 속한다. 그래야만 독도연구소가 독도 연구를 기획하고 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연구소가 독도 연구에 기여한 성과를 토대로 현재 미진하거나 확장해야 할 연구 분야를 ‘기획’해서 독도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개소 10주년을 맞아 독도연구소와 연구원의 역량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국문초록

해방 이후 국내 독도 연구의 최대 성과는 역사학, 국제법, 지리학, 국제정치, 역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갖고 있었고,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독도연구소가 큰 역할을 하였다. 독도연구소는 영토와 해양 관련 전문 학술지로 2011년 『영토해양연구』를 창간하였다. 이 논문은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독도 관련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도연구소와 『영토해양연구』는 자료 발굴과 실증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도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전문성을 토대로 독도에 대한 연구와 자료 발굴에 앞장섰다. 그 결과 독도연구소와 『영토해양연구』가 자리잡는데 기여했다. 독도연구소가 문을 연 지 10주년을 맞이했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독도 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 ‘기획’ ‘선도’할 수 있도록 독도연구소와 연구원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주제어〉

독도연구소, 『영토해양연구』, 자료 발굴

ABSTRACT

The Trends and Results of Research on Dokdo:
Focusing on the Dokdo Research Institute's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Park, Jinhe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Since Korea's liberation in 1945, the greatest output of domestic research on Dokdo has been the accumulation of achievemen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history, international law, geography, international politics and history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prove that Dokdo is an integral part of Korean territory. The goal was fulfilled successfully and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played a major role in this process.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launched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in 2010 as an academic journal for territorial and maritime issues. This paper analyzed research papers on Dokdo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and the journa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terials discovery and empirical research, while the institute's researchers who have expertise are at the forefront of Dokdo-related studies. As a result,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and the journal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It is time for Dokdo researchers to concentrate their capabilities and gather wisdom to "plan" and "lead" studies on the is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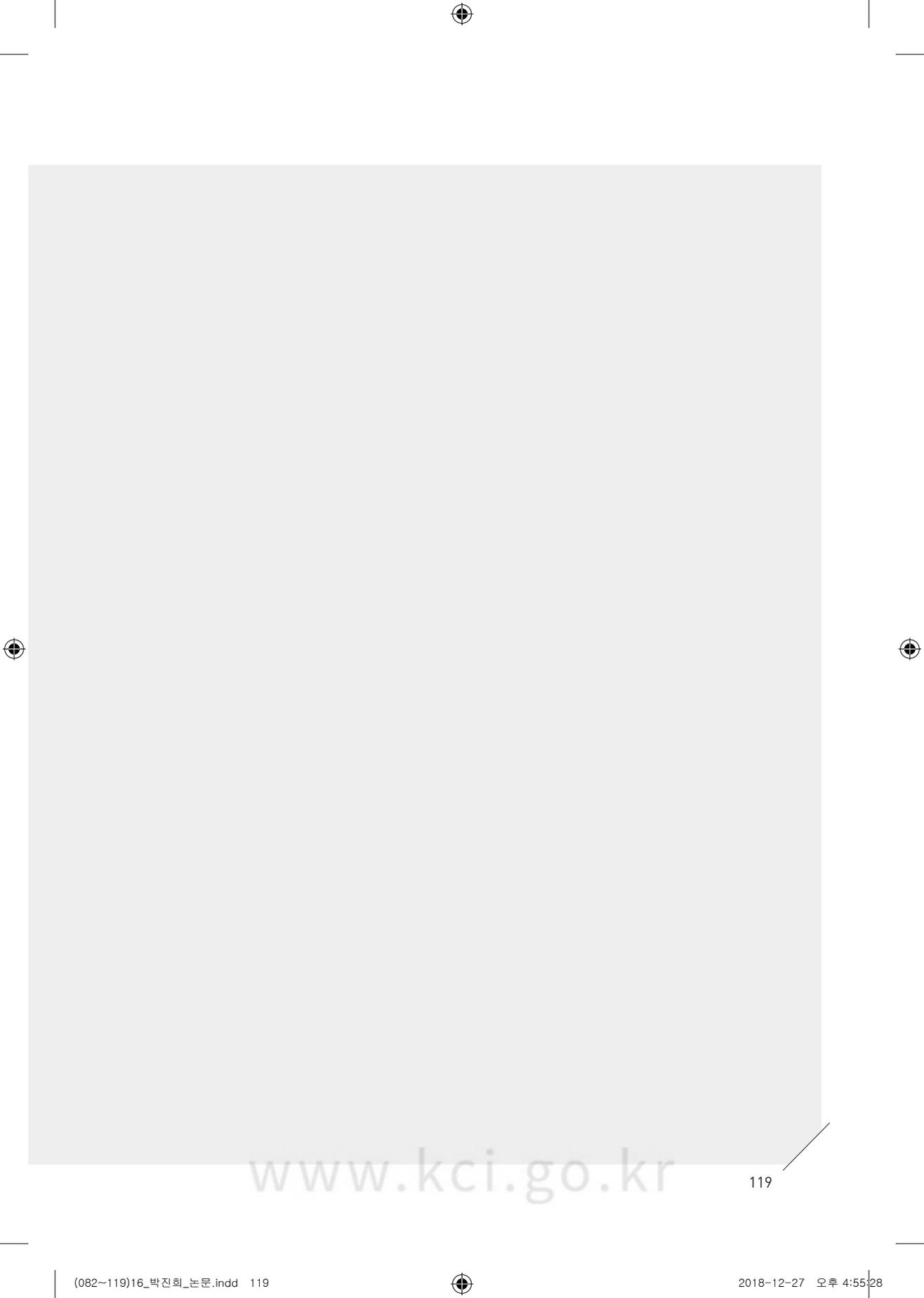
Keywords

Dokdo Research Institute, Finding of Historical Materials,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참고문헌

- 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지음, 2013,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 역사재단.
- 김병렬·노영근·이상근, 2009, 『독도 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방향』,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 김소용·남상준, 2015, 「영토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독도교육을 사례로」, 『초등교과교육연구』 21.
- 김호동, 2012,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이사부와 동해』 Vol. 4.
- 김호동, 2013, 「『鬱島郡節目』을 통해 본 1902년대의 울릉도 사회상」, 『장서각』 30.
- 문철영, 2016, 「독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제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No. 21.
-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진희, 2006, 「제1공화국 시기 ‘평화선’과 한일회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 박진희, 2009,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평화선과 어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 정치외교의 주요 쟁점과 논의』, 선인.
- 박진희, 2017, 「한일회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69.
- 배경한, 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蔣介石」, 『역사학보』 224.
- 배재홍,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 손승철, 2015, 「조선후기 수토 기록의 문헌사적 연구－울릉도 수토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51.
- 신용하, 2015, 「대한제국의 독도 영토 수호정책과 일제의 독도 침탈정책」, 『독도연구』 18.
- 오제연, 2005, 「평화선과 한일협정」, 『역사문제연구』 14.
- 유미림, 2006, 「독도 자료집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 유미림, 2009,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 이성환, 2011, 「독도 연구의 회고와 전망－2010년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

- 이성환, 2014,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9.
- 이원덕·전상숙 등, 2013,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 이원택, 2017, 「19세기 울릉도 수도 연도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23.
-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 정병준, 2014,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 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 107.
- 정재정, 201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 조세영, 2014,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시준, 2014,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 한철호, 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www.kci.go.kr